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길영 의원(찬성자 : 14명)

나. 의안번호 : 제 1615 호

다. 발의일자 : 2024. 2. 5.

라. 회부일자 : 2024. 2. 7.

2. 제안이유

가.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 편익시설의 운영·관리를 민간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을 위탁 또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제2항 및 제3호 신설)

나. 시장은 편익시설의 사용료 징수를 안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는자 또는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의2제6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원안(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4. 02. 14. ~ 02. 18.) 결과: 의견없음

■ 개요

- [표 1] 개정안 주요골자(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5조의2제6항)

- 1)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주민복지향상) ① 물재생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주민협의회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에게 개방하여 이용하게 하는 등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 2)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편익시설"이라 함은 물재생시설 부지 내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조경시설, 체육시설, 주차장시설 등을 말한다.

■ 물재생센터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

- 서울시 관내 4개(중랑, 난지, 서남, 탄천) 물재생센터에서 설치·운영 중인 편익시설은 체육시설, 주차장시설, 전시 및 체험시설 등으로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음.

[표 2] 물재생센터별 편익시설 현황

센터명	규 모(㎡)	편익시설 구분		비 고
중랑물재생센터	3,600	체육시설	- 축구장 1면	
	560		- 실내 배드민턴장 4면	
	860		- 풋살장 1면	
	1,108		- 족구장 2면	
	1,209		- 테니스장 2면	
		주차장시설	- 주차면 102면	
		전시 및 체험시설	- 서울하수도과학관	
난지물재생센터	496	체육시설	- 테니스장 4면	
	660		- 다목적구장 (족구장 1면, 농구장 1면)	
	6,400		- 축구장 1면	
서남물재생센터	12,700	체육시설	- 테니스장 14면	
	144		- 실내탁구장 4면	
	12,210		- 파크골프장 9홀	
	5,589		- 축구장 1면	
		전시 및 체험시설	- 서울물재생체험관	
탄천물재생센터	629	체육시설	- 게이트볼장 1면	북개공원 1단계
	437		- 배드민턴장 2면	
	1,289		-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1,320		- 농구장 2면	마루공원
	2,004		- 족구장 2면	
	2,253		- 풋살장 2면	
	2,367		- 테니스장 3면	
	2,070		- 족구장 2면	에코파크
	1,568		- 풋살장 1면	
	9,800		- 축구장 1면	탄천물재생센터 내부 체육시설
	1,232		- 테니스장 2면	
		주차장시설	- 주차면 125면	

- 이 중 중랑 및 난지 물재생센터 편익시설의 경우 서울시가 직영하고 있고, 서남 및 탄천 물재생센터의 경우는 공단에서 일괄 대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대부분의 편익시설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나 서남 물재생센터 내 체육시설 일부와 중랑 및 탄천 물재생센터 내 주차장시설의 경우 유료로 운영 중에 있음.([표 3] 참조)

[표 3] 물재생센터 내 편익시설 사용료 현황

센터별	편익시설 구분	항목	사용료	회계처리현황	비고
중랑	주차장시설	주차료	300원/10분	세외수입 조치	
난지	체육시설	테니스장 등	무료		
서남	체육시설	테니스장	5,000원/1시간		
		탁구장	1,500원/1시간		
		파크골프장	3,000원/9홀		
		축구장	무료		
탄천	주차장시설	주차료	200원/10분		

■ 조례안 주요 조문별 의견

- 먼저, 안 제5조제2항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 편익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거나 공단에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설치하려는 것이고, 안 제5조제3항은 안 제5조제2항에 따라 편익시설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등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하려는 것임.
- 현행 조례 제7조³⁾를 보면 서울시 물재생시설⁴⁾(편익시설은 별개임)

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하수도법」 및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능력이 있는 관리대행업자⁵⁾가 운영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리대행업자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하수도법 시행령」〔별표 1의2〕〔붙임〕참조)의 등록기준을 만족해야 함.

○ 이러한 점에서 살펴볼 때, 현재 물재생센터 내 설치된 편익시설은 체육시설(축구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등), 주차장시설, 전시 및 체험시설 등으로 물재생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과는 크게 구별되기 때문에 편익시설 운영·관리를 물재생시설 관리

3)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관리·운영의 관리대행) ① 시장은 물재생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기 위하여 물재생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하수도법령 및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능력이 있는 관리대행업자에게 관리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할 수 있는 물재생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재생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2.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3. 하수 및 분뇨의 처리
4.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시험
5.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6.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물재생시설의 관리·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③ - ④ (생략)

4)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재생시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같은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을 말한다.

2. - 6. (생략)

5)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② - ④ (생략)

대행의 업무에 포함하는 것은 편익시설의 운영 활성화 측면에서 그리 바람직한 운영 형태라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다만, 직영이나 대행의 경우 전문성을 요하는 편의시설에 대해 관련 전문인력을 별도로 운영한다면 굳이 민간위탁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제성 측면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임.
- 따라서, 편익시설의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일부 전문성을 요하는 편익시설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직영 또는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6)에서는 시장이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7)에서 문

6)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7)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생략)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 9. (생략)

화·체육·관광시설, 공원시설,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과 같이 편익시설의 운영·관리 사무를 필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는 것은 법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 하겠음.

- 다음으로, 안 제5조의2제6항은 현행 조례 제5조의2제1항⁸⁾에 따른 편익시설 사용료를 안 제5조제2항에 따라 편익시설의 운영을 위탁받는 자가 시장을 대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 시행의 정합성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 하겠음.

[붙임]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2]

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① 시장은 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편익시설 운영을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할 수 있다.

[붙임]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2]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2. 1. 4.>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제15조의2제1항 관련)

1. 장비

가. 공공하수도(하수관로는 제외한다) 관리대행

- 1) 수온,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DO) 및 산화환원전위(ORP) 측정기
- 2) MLSS(Mixed Liquor Suspended Solid) 측정기
- 3) 실험분석장비(방류수수질기준 항목)
- 4) 이동식 유량계(1대 이상)

나. 하수관로 관리대행

- 1) 준설차량
- 2)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 3) 연막시험용 배풍기
- 4) 공기압 시험기

비고

1. 복합기능을 갖춘 측정기나 측정장비를 보유할 경우 해당 보유수량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공기압시험기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 생태독성분석에 필요한 장비인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자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요한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준설차량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기술인력

구분		기술인력
	시설용량	
가. 공공 하수도(하수관로는 제외한다) 관리대행	1) 500m ³ /일	가)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1)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미만	나) 수질환경기사 1명 다) 다음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1)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2) 화공기사 (3) 토목기사 (4)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라) 환경측정분석사 1명
	2) 10,000m ³ /일 미만	가)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1)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나)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기사 2명 이상(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화공기사 (2)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3)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다)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2명 이상(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토목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2)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3) 기계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라) 환경측정분석사 1명
	3) 10,000m ³ /일 이상	가)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1)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나)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기사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4년 이상 인력 각 1명 이상 (1)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화공기사 (2)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3)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다)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기사 각각 1명 이상 (1)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화공기사 (2)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3)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라)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각각 1명 이상 (1) 토목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2)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3) 기계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마) 환경측정분석사 1명
나. 하수관로 관리대행		가) 다음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1) 수질환경기사 (2) 토목기사 (3)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4)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나) 다음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인력 중 2명 이상 (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수질환경산업기사 (2) 토목산업기사

	(3)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4) 기계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	--

비고

1.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는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상하수도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및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상하수도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근무자로 환경 관련 분야에서 12년 이상 근무하고, 3년 이상 상하수도 분야 실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기사는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산업기사는 관련 분야의 기능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환경측정분석사는 수질환경·폐기물처리·화공·화학분석·생물공학 기사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 중 1년 이상 분석 실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